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3412     |
| 의 퇴 인 | 이주영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11.11. |
| 추계번호  | 24C3467     |

#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현행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을 “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”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9억원(시나리오 1)부터 78억원(시나리오 2) 등 향후 5년간 총 195억원에서 390억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시나리오1<br>(보상단가: 1.5억원) | 3,900 | 3,900 | 3,900 | 3,900 | 3,900 | 19,500 | 3,900 |
| 시나리오2<br>(보상단가: 3억원)   | 7,800 | 7,800 | 7,800 | 7,800 | 7,800 | 39,000 | 7,800 |

주: 동 추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수를 준용한 결과로,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될 보상 범위 및 보상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6조<br>(불가항력 의료사고<br>보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(이하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)을 실시함(제1항)</li> <li>1.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(현행)</li> <li>2. <b>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(개정)</b></li> </ul>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6조<br>(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) | ○        | 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을 준용하여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(이하 “응급 상황 의료사고”)를 보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보상금액별 시나리오로 제시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행법 제46조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<sup>1)</sup>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“의료사고 보상사업”을 수행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가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고 있음(2024년 기준 2.7억원 배정)
  - 현행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3,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([표 2] 참조),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보상단가를 최대 3억원으로 인상하려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(2024.10.24.~2024.12.03.) 중 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응급 상황 의료사고의 보상단가는 1.5억원에서 3억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가정
  - 개정안에 따른 응급 상황 의료사고의 종류별 보상단가 수준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, 모든 사고에 대해 1.5억원을 보상하는 경우(최소)와 3억원을 보상하는 경우(최대)를 시나리오로 제시함
    - －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네 가지 유형에 따라 보상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, 응급 상황 의료사고의 경우 사고의 유형 구분 여부 및 보상 차등 여부 등을 현시점에 가정하기 어려움

1)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[표 2]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단가

(단위: 만원)

| 구 분 | 신생아 뇌성마비 | 불가항력적 사망 사고 |   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|          | 산모 사망       | 신생아 사망 | 태아 사망  |
| 현행  | 3,000    | 3,000       | 2,000  | 1,500  |
| 변경  | 30,000   | 15,000      | 15,000 | 15,000 |

- 또한, 개정안은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중 의료사고보상심 의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건에 대해 보상사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으나, 현재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“응급의학과”의 의료분쟁 처리 사건 수를 활용
 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외에도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이때 접수되는 의료분쟁 건 중 “응급의학과”의 의료분쟁 처리 건수를 개정안에 따른 ‘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’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
  - 다만, 응급 상황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응급의학과 이외의 진료과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,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정해질 보상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따라서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응급 상황 의료사고 보상비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나 사업비는 현행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존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응급 상황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 - (보상 단가) 의료사고 1건당 1.5억원을 지원하는 경우(시나리오 1)과 3억

원을 지원하는 경우(시나리오 2)를 구분하여 추계

- 보상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1.5억원과 3억원으로 각각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**(보상 건수)**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건수(45건)에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조정 사건 중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사건의 비중(63.7%)<sup>2)</sup>과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청구 건수 대비 인용 건수 비중(91.2%)을 곱하여 추계
  - 의료분쟁 건수와 분만 의료사고 인용 건수 비중은 최근 5년(2020~2024년) 평균 값을 적용
  - 최근 5년간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감정처리 건수에 일정한 추이가 발견되지 않으므로, 평균 수치를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응급 상황 의료보상 건수는 매년 26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감정처리 및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현황  
(단위: 건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 | '24년             | 평균/<br>인용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응급의학과 의료분쟁<br>감정처리 건수 |       | 45   | 47   | 50   | 41   | 44 <sup>1)</sup> | <b>45</b>    |
| 불가항력 분만<br>의료사고       | 청구 건수 | 16   | 15   | 8    | 18   | 11               | <b>91.2%</b>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인용 건수 | 16   | 13   | 8    | 16   | 9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주: 1. 감정완료일을 기준으로 각하사건은 제외한 수치임

1) 2024년은 9월 말 기준 33건을 연간 환산한 값임

자료: 보건복지부

□ 추계 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9억원(시나리오 1)부터 78억원(시나리오 2) 등 5년간 총 195억원에서 39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시나리오1<br>(보상단가: 1.5억원) | 3,900 | 3,900 | 3,900 | 3,900 | 3,900 | 19,500 | 3,900 |
| 시나리오2<br>(보상단가: 3억원)   | 7,800 | 7,800 | 7,800 | 7,800 | 7,800 | 39,000 | 7,800 |

주: 동 추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수를 준용한 결과로,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될 보상 범위 및 보상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조정완료된 9,152건 중 응급의학과 의료분쟁사건 234건을 분석한 결과임(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, 「의료사고 예방 소식지(vol.25)」)

## IV. 부대의견

- 동 추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수를 준용한 결과로,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될 보상 범위 및 보상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임슬기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임슬기 | 02-6788-4740 | sg.lim@assembly.go.kr |